탄 원 서

제 1 심 · 공소사실별 무죄 요청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 부 귀중
사건번호	2025 고합 1566
피고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사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탄원 취지	각 공소사실의 엄격한 심리 및 증명 부족 부분 무죄 선고 요청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저는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의 후속 수사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소사실별 책임이 증거에 따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되기를 바라는 시민입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세상을 떠난 채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고통과 사건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조금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편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과 특정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각자의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피고인이 고위공직자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행위가 무엇인지, 그 행위가 법률상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 끝까지 밝혀 달라는 뜻에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1. 사건 전체의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 개인의 행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 경찰 이첩의 보류 및 사건기록 회수,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에 대한 후속 조치, 조사결과 재검토 과정 등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군 수사의 독립성과 국가기관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기관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인 만큼 각 행위의 주체, 시각, 지시의 내용과 전달 경로, 실제 조치의 결과를 분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장관이라는 지위에서 업무를 보고받았다는 사실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결과를 의도하여 특정 행위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재판부께서 각 공소사실마다 그 연결고리를 증거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대통령과의 통화 및 기존 결재의 재검토 경위를 모두 살펴주십시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 년 7 월 말 대통령과 채 해병 사건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기존 결재가 재검토되고 사건 이첩 보류가 지시된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후관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 존재 자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 통화에서 전달된 말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이 내린 후속 지시, 그 지시의 위법성에 관한 인식은 단계별로 다른 증명 대상입니다. 통화기록의 시각과 길이, 통화 직전과 직후의 보고·결재 문서, 참석자 진술, 실제 하달된 지시의 문언을 함께 대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첩 보류에 관하여 피고인 측이 제기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이라는 설명이 객관적 기록과 일치하는지도 판단해 주시되, 그 해명이 확인 없이 진실로 전제되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배척되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3. 수사 지휘·감독 권한과 직권남용의 법적 결과를 엄격히 구분해 주십시오.

국방부 장관은 군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책무를 지지만, 그 권한이 군사법경찰의 법정 절차와 독립적인 판단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평가할 때에는 당시 적용되던 군사법 체계와 사건 이첩의 법적 절차, 장관에게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 123 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와 그 권한의 남용 여부,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있었는지, 그 결과와 피고인의 지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각각 문제 됩니다. 부적절한 지시였다는 평가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위법한 강요가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4. 경찰 이첩 보류와 사건기록 회수는 각각의 행위자로 나누어 판단해 주십시오.

해병대수사단의 경찰 이첩이 언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는지, 이첩 뒤 기록을 회수한 결정은 어느 기관의 누가 어떤 법적 근거를 들어 내렸는지, 피고인의 지시가 그 과정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했는지를 분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의 존재와 실제 집행, 결과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모든 인과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회수를 지시했는지 또는 이미 이루어진 조치를 사후에 보고받았는지, 다른 관계자의 독자적 판단이 개입했는지, 당시의 기록과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를 대조해 주십시오. 특히 공소사실상 행위와 별도의 기관 조치를 혼동하지 않는 세심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5. 특정 지휘관의 혐의자 제외 의혹 및 후속 조치도 별도로 심리해 주십시오.

조사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제 1 사단장의 책임을 제외하거나 줄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및 항명 관련 조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의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대한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어떤 결론을 요구했는지, 그러한 요구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후속 문서의 실제 변화가 그 요구에서 비롯되었는지, 각 조치의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주장 역시 직접 또는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6. 증인의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이 다른 부분을 촘촘히 확인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통화기록, 보고서와 결재 문건, 전자적 송수신 기록, 당시 회의 참석자의 진술과 사후 증언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보고받은 시각과 범위, 자신의 역할에 따라 기억이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난 뒤의 추정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섞일 위험도 있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진술이 처음 나온 시기, 이후 변경된 부분,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각 진술자가 직접 보거나 들은 범위를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뿐 아니라 유리한 정황과 대안적 설명도 동일한 엄격함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개 보도만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구체적 증인의 진실성을 이 글에서 미리 판정하지 않겠습니다.

7.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채 해병의 순직 경위와 후속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동시에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직책, 공적 비판 또는 사건의 사회적 파장만으로 유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공소사실에 필요한 고의와 행위, 법적 결과,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는 공판기록 전체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모든 결정이 적법했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 307 조 제 2 항의 증명 기준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325 조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믿습니다.

맺음말

존경하는 재판부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인의 희생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종섭 전 장관의 형사책임을 적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책임이 누구의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도 빠짐없이 심리하시되, 대통령과의 통화, 이첩 보류, 기록 회수, 조사결과의 변경 및 후속 인사·수사조치 사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지시하거나 실행한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중 고의·위법행위·구체적 결과 및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사회적 논쟁을 넘어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내리실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선택)　　생년월일: _____